

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361
----------	------

2016년 9월 9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김태수 의원 외 12명

나. 발 의 일 : 2016년 8월 12일

다. 회 부 일 : 2016년 8월 16일

라. 상 정 일 : 제27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
2016년 9월 6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태수 의원)

가. 제안 이유

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개인영상정보가 대부분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 및 시스템이 정교하게 마련되어야 하며, 특히 운영자가 이를 취급할 때 개인영상정보 접속기록 및 조작행위기록 등을 남기도록 시스템화할 뿐만 아니라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임의조작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의 접속기록,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행위기록을 안전하게 보관·관리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(안 제4조제6항 신설).
- 2)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행위 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(안 제4조제7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『개인정보보호법』 및 같은 법 시행령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한태식)

가. 조례안의 개정취지 및 필요성

-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 제6항과 제7항을 신설하여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에 개인영상정보 접속기록 및 조작행위기록 등을 남기도록 법적근거를 명시하고(안 제4조제6항 신설), 개인영상정보가 오용·남용되지 않도록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(안 제4조제7항 신설)하려는 것인바, 개인정보보호법령상 인정되는 개인영상정보보호 안전조치를 조례에 명시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.

※ 「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현재 총 1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·시행되고 있으며, 서울시 관내 자치구는 4곳(강북구, 노원구, 양천구, 종로구)에서 조례를 시행 중임¹⁾.

나. 개인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및 조작행위기록 보관·관리 조항 신설

(안 제4조 제6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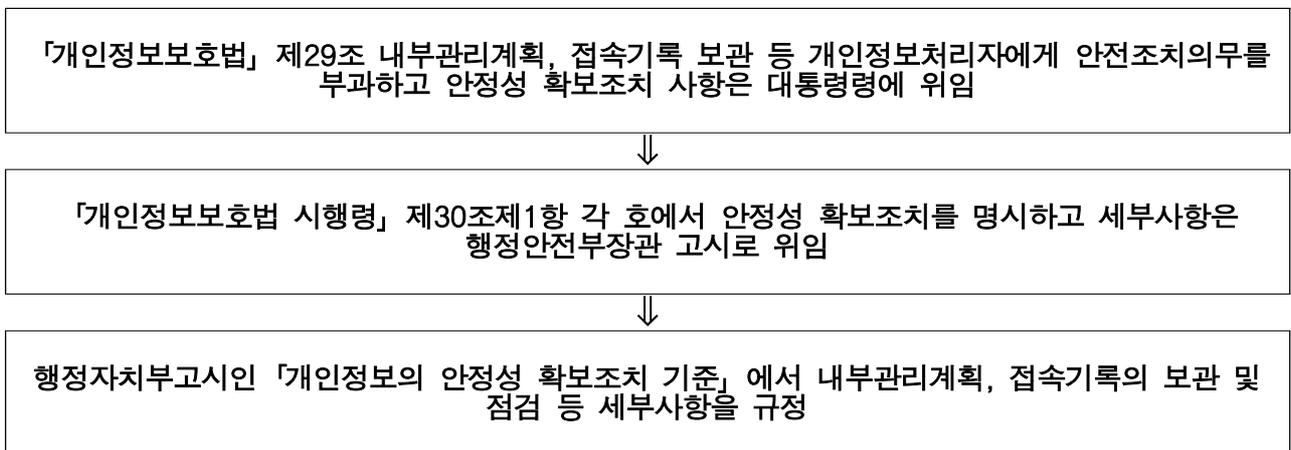
- 안 제4조제6항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속기록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행위기록을 안전하게 보관·관리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상위법령(「개인정보보호법」)의 위임²⁾에 따라 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과 행정자치부 고시인 「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」에서 개인정보의 유출·도난·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.

1) < 「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정 현황 >

○ 다만, 보편적 보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.

순번	조례명	구분
1	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광역시 자치 단체
2	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조례	
3	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
4	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·운영 조례	서울 시 관 내
5	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-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	
6	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	
7	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	
8	계룡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·관리 조례	기 초 지 방 자 치 단 체
9	논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·운영 조례	
10	대구광역시달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	
11	대구광역시 동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·운영 조례	
12	대구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	
13	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·운영 조례	
14	수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
15	안동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·운영 조례	
16	완주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	
17	의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·운영 조례	
18	인천광역시부평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	
19	칠곡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	

2) 개인정보보호법령상 안전조치 관련 위임구조



현행	개정안
제4조(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) ①~⑤ 생략	제6조(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) ①~⑤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⑥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속기록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행위기록은 안전하게 보관·관리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 받아야 한다.

※ 경기도는 「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조례」를 통해 서울시와 유사한(제4조(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)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 접속기록,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행위기록을 남기고 소명처리 하여야 한다) 규정을 두고 있음.

※ 서울시(정보통신보안담당관-16.8.22)는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을 통해 안전조치가 가능하며, 제4조는 보호원칙으로써 입법체계상 조정이 필요하다고 수정의견과 함께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별도조항 신설이 필요함을 피력함.

〈집행부 수정의견(案)〉

의원발의 개정안	수정의견
제4조(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) ①~⑤ 생략	제4조(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) ①~⑤ (현행과 같음)
⑥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속기록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행위 기록은 안전하게 보관·관리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 받아야 한다.	⑥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속기록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행위 기록은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.

다. 개인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조항 신설(안 제4조 제7항)

- 안 제4조제7항 신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의 오·남용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임의조작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상정보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바,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자 등의 오·남용 및 임의조작행위를 예방하여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.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) ①~⑤ 생략	제4조(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) ①~⑤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⑦ 개인영상정보가 오용·남용되지 않고 영상 정보처리하기 임의조작행위를 예방하기 위 하여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야 한다.

- 다만,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서울시 정보기획관은 유사한
기능의 영상관리시스템(VMS)³⁾을 구축운영 중에 있는 바, 기능보강 및 별도의
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 구축시 예산 수반 등 중복투자 가능성은 없는지
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(참고자료①).

3) 영상정보관리시스템 vs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 비교

구 분		영상정보 관리시스템	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
1	계정 생성 (ID, 비밀번호)	○	○
2	계정별 권한 부여 (영상정보 열람·복제·백업, CCTV카메라 조작 등)	○	○
3	권한을 부여받은 관제요원의 행위에 대한 로그 저장 및 조회	○	○
4	CCTV카메라 및 서버 등에서 발생하는 장애 이벤트에 대한 로그 저장 및 조회	○	○
5	저장된 로그를 파일 형태로 출력 (EXCEL, PDF 파일)	○	○
6	로그에 대한 통계처리 (그래프 형태)	4번 가능	3번, 4번 가능
7	CCTV카메라가 촬영한 영상파일 실시간 저장	○	X
8	경찰 및 민원인에게 영상정보 제공시 제3자 마스킹 처리	○	X

○ 따라서, 서울시와 자치구 관내에 기 구축·운영 중인 영상정보관리시스템이 본 개정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영상정보관리시스템과 성격이 유사한지 여부를 살펴 '시스템'명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서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※ 서울시(정보통신보안담당관-16.8.22)는 자치구별로 기 구축한 영상정보관리시스템이 관제요원별 권한 부여 및 행위 기록 등 영상정보 유출, 오용·남용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동일 기능이 있는 타 시스템을 추가 구축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수정안을 제안함.

〈집행부 수정의견(案)〉

의원발의 개정안	개 정 안
제4조(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) ①~⑤ 생략	제4조(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) ①~⑤ (현행과 같음)
⑦ 개인영상정보가 <u>오용·남용되지 않고 영상 정보처리하기</u> 임의조작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.	⑦ 개인영상정보의 <u>유출 및 오용·남용</u>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.

6. 토 론 요 지 : 없 음.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8명, 전원찬성).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.

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태수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36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년 8월 12일

발 의 자 : 김태수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우형찬·장우윤·최관술·황준환·
박중화·성중기·신원철·서영진·
김인호·유 용·김동윤·김영한
의원(12명)

1. 제안 이유

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개인영상정보가 대부분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 및 시스템이 정교하게 마련되어야 하며, 특히 운영자가 이를 취급할 때 개인영상정보 접속기록 및 조작행위기록 등을 남기도록 시스템화할 뿐만 아니라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임의조작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함

따라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의 접속기록,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행위기록을 안전하게 보관·관리·점검토록 하고,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행위 예방을 위해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토록 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코자 함

2. 주요 골자

- 가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의 접속기록,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행위기록을 안전하게 보관·관리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(안 제4조제6항 신설)
- 나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행위 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(안 제4조제7항 신설)

3. 참고 사항

- 가. 관련 법령
 - 『개인정보보호법』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기 타
 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 - (2) 비용추계서 : 별첨

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속기록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행위기록은 안전하게 보관·관리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.

제4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개인영상정보가 오용·남용되지 않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) ① ~ ⑤ (생략)</p> <p>〈신설〉</p> <p>〈신설〉</p>	<p>제4조(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<u>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속기록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행위기록은 안전하게 보관·관리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.</u></p> <p>⑦ <u>개인영상정보가 오용·남용되지 않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.</u></p>

「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개정안 제4조(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)제6항 및 제7항 신설조항 개인 영상정보 안전 보관·관리, 오용·남용 방지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 행위 예방을 위해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에 따라 비용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9조 내부관리계획, 접속기록 보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안전조치의무 대상 영상정보처리기기

나. 전제

- 동 조례안 제4조 제7항에 따른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비용은 추계기간 중(2017~2021년) 최초 구축시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, HW 유지 관리 비용은 최초 1년간 무상수리 후 2년차 이후부터 초기 구축비용에 연 8%로 추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고 산출 함
- 추계비용 산출은 조달물자 나라장터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(2018. 8.현재 2개 사업자 등록)
-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은 서버를 포함하는 일체형 1식으로 함
- 시스템 구축물품 규격은 CCTV 관리대상 수를 기준으로 함

※ CCTV 관리대상 수에 따른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 규격 적용기준

- CCTV 관리대상 50대 이하는 서울시 설치관리 부서별 통합 합산하여 1대로 적용하고, 51~100대이하 , 200대이하, 300대 이하, 500대 이하, 700대 이하, 1,000대 이하, 2,000대 이하, 3,000대 이하, 4,000대 이하, 5,000대 이하, 6,000대 이하,

7,000대 이하로 규격 적용

- 시스템 구축 추계비용 산출은 나라장터 조달물자 등록 2개 사업자가 제시한 가격 평균액으로 함
- 단, 2018.8월 현재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운영중인 자치구는 비용추계 제외(4개구 : 강북구, 중랑구, 서초구, 영등포구, 금천구)
- 연간 HW 유지관리비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추산
 - 연간 HW 유지관리비(연간) : 초기시스템 구축비 x 8%
 - HW 유지관리비는 추계기간 중(2017~2021년) 2차년도(2018년)부터 발생하고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음
 - HW 유지관리비는 “2017년 정보화사업 유지관리 대상 유형별 유지관리비 등 세부 산정기준”에 따라 연 8%로 함
- 추계기간(5년간)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다. 추계기간 :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함(2017~2021년)

라. 방법

- 모든 비용은 동 조례안 제4조(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)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에 따라 비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, 나라장터 조달물자 등록 업체(2개소)에서 제공한 자료(견적서)에 따라 비교견적 후 평균액으로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비용추계 결과 ≍ 41억 8,242만원
- 5년간 41억 8,242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, 연평균 8억 3,648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 (2017년)	2차년도 (2018년)	3차년도 (2019년)	4차년도 (2020년)	5차년도 (2021년)	합계
구분	세입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구분	세출	3,168,500	-	-	-	-	3,168,500
	영상정보내부 통제시스템구 축비	-	253,480	253,480	253,480	253,480	1,013,920
	소계(b)	3,168,500	253,480	253,480	253,480	253,480	4,182,420
□ 총 비용(b-a)		3,168,500	253,480	253,480	253,480	253,480	4,182,420

4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예산정책담당관
담 당 관	남 승 우
사업평가팀장	황 훈
분 석 관	정 상 대

☎02-3705-1284, e-mail(jsds@seoul.go.kr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대상과 방법

가. 대상

-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9조 내부관리계획, 접속기록 보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안전조치의무 대상 영상정보처리기기
 - 「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) 적용 대상 CCTV (자치구 및 서울시 각 부서에서 설치 운영중인 CCTV)
- ※ 서울시 및 자치구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·운영대수 현황 : ‘붙임1’

나. 방법

- 모든 비용은 같은 조례안 제4조(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)제6항 및 제

7항에 따라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, 나라장터 조달물자 등록 업체(2개소)에서 제공한 자료(견적서)를 준용하여 비교견적 후 평균액으로 추계

※ 영상정보내부 통제시스템 구축비용 비교 견적표 : 업체별 견적서 '붙임 2' 참조

□ 품 명 :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(서버 및 설치비포함)

단위 : 원

규격 (관리대상 CCTV대수)	수량 (식)	공급가액(부가세포함)			유지관리비 (8%)
		(주)포드림	(주)우산씨엔씨	평 균 액	
100대 이하	1	13,000,000	11,000,000	12,000,000	960,000
200대 이하	1	21,000,000	17,000,000	19,000,000	1,520,000
300대 이하	1	27,000,000	23,000,000	25,000,000	2,000,000
500대 이하	1	35,000,000	34,000,000	34,500,000	2,760,000
700대 이하	1	42,000,000	44,000,000	43,000,000	3,440,000
1,000대 이하	1	53,000,000	65,000,000	59,000,000	4,720,000
2,000대 이하	1	88,000,000	121,000,000	104,500,000	8,360,000
3,000대 이하	1	120,000,000	171,000,000	145,500,000	11,640,000
4,000대 이하	1	120,000,000	171,000,000	145,500,000	11,640,000
5,000대 이하	1	120,000,000	171,000,000	145,500,000	11,640,000
6,000대 이하	1	120,000,000	171,000,000	145,500,000	11,640,000
7,000대 이하	1	120,000,000	171,000,000	145,500,000	11,640,000

※ 2016.8월 현재 나라장터에 등록된 조달물자 등록업체 2개소 가격비교 기준임

다. 비용 추계

○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비용

- 1차년도 총비용(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 총 60대): 3,168,500천원

- 서울시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 총 39대 구축 : 1,372,000천원
- 자치구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 총 21대 구축 : 1,796,500천원
- ※ CCTV 총 59,524대(서울시 25,644대, 자치구 33,880대)
- 2~5차년도 총비용 : 1,013,920천원(연평균: 253,480천원)
- HW 유지관리비(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 총 60대) : 1,013,920천원
- 비용 총액(합계) ≍ 41억 8,242만원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 (2017년)	2차년도 (2018년)	3차년도 (2019년)	4차년도 (2020년)	5차년도 (2021년)	합계
구분	세입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구분	세출						
	영상정보내부 통제시스템구 축비	3,168,500	-	-	-	-	3,168,500
	HW 유지관리비	-	253,480	253,480	253,480	253,480	1,013,920
	소계(b)	3,168,500	253,480	253,480	253,480	253,480	4,182,420
□ 총 비용(b-a)		3,168,500	253,480	253,480	253,480	253,480	4,182,420

※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 설치(대상) 및 비용산출 현황

(단위 : 원)

기관 (부서)명	CCTV 설치대수	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 설치현황 및 비용			
		설치 규격	설치 대수	소요비용 (부가세포함)	유지관리비/연간 (설치비*8%)
총 계	59524		60	3,168,500,000	253,480,000
소 계	1570		6	153,500,000	12,280,000
공간정보담당관	1	200대이하 (162대)	1	19,000,000	1520000
정보통신보안담당관	7				
도로관리과	9				
역사도심재생과	11				
정보공개정책과	16				
인재개발원	16				
대기관리과	22				
시민봉사담당관	25				
민방위담당관	26				

시민소통담당관(시민청)	29				
역사문화재과	68	100대이하	1	12000000	960000
소상공인지원과	128	200대이하	1	19000000	1520000
교통정보센터	329	500대이하	1	34500000	2760000
총무과	440	500대이하	1	34500000	2760000
소방재난본부	443	500대이하	1	34500000	2760000
소 계	5133		22	547500000	43800000
농업기술센터	6	300대이하 (272대)	1	25000000	2000000
품질시험소	12				
공무원수련원	16				
교통방송	16				
도시기반시설본부	16				
아동복지센터	16				
119 특수구조단	18				
서울도서관	38				
데이터센터	38				
서울종합방재센터	47				
난지물재생센터	49				
성동도로사업소	56	100대이하	1	12000000	960000
어린이병원	81	100대이하	1	12000000	960000
동부도로사업소	90	100대이하	1	12000000	960000
서북병원	93	100대이하	1	12000000	960000
체육시설관리사업소	94	100대이하	1	12000000	960000
한성백제박물관	108	200대이하	1	19000000	1520000
남부도로사업소	108	200대이하	1	19000000	1520000
동부공원녹지사업소	115	200대이하	1	19000000	1520000
강서도로사업소	136	200대이하	1	19000000	1520000
은평병원	152	200대이하	1	19000000	1520000
북부도로사업소	156	200대이하	1	19000000	1520000
서울역사박물관	157	200대이하	1	19000000	1520000
서부도로사업소	157	200대이하	1	19000000	1520000
서부공원녹지사업소	198	200대이하	1	19000000	1520000
서울시립미술관	214	300대이하	1	25000000	2000000

중부공원녹지사업소	219	300대이하	1	25000000	2000000
한강사업본부	294	300대이하	1	25000000	2000000
서울대공원	358	500대이하	1	34500000	2760000
소방서	402	500대이하	1	34500000	2760000
서울시립대학교	592	700대이하	1	43000000	3440000
상수도사업본부	1081	2,000대이하	1	104500000	8360000
소 계	18941		11	671000000	53680000
시립교향악단	2	100대이하 (52대)	1	12000000	960000
서울연구원	7				
서울복지재단	11				
여성가족재단	32				
SH공사	73	100대이하	1	12000000	960000
서울신용보증재단	89	100대이하	1	12000000	960000
세종문화회관	134	200대이하	1	19000000	1520000
서울의료원	304	500대이하	1	34500000	2760000
서울디자인재단	520	700대이하	1	43000000	3440000
서울산업진흥원	662	700대이하	1	43000000	3440000
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	936	1,000대이하	1	59000000	4720000
서울시설공단	3047	4,000대이하	1	145500000	11640000
서울도시철도	6091	7,000대이하	1	145500000	11640000
서울메트로	7033	7,000대이하	1	145500000	11640000
소 계	33880		21	1796500000	143720000
도봉구	623	700대이하	1	43000000	3440000
강북구	661	700대이하	0		기 설치운영중
마포구	767	1,000대이하	1	59000000	4720000
송파구	771	1,000대이하	1	59000000	4720000
중랑구	807	1,000대이하	0		설치운영중
광진구	876	1,000대이하	1	59000000	4720000
양천구	926	1,000대이하	1	59000000	4720000
강동구	929	1,000대이하	1	59000000	4720000
중구	963	1,000대이하	1	59000000	4720000
강서구	1087	2,000대이하	1	104500000	8360000
노원구	1187	2,000대이하	1	104500000	8360000

동작구	1189	2,000대이하	1	104500000	8360000
서대문구	1254	2,000대이하	1	104500000	8360000
금천구	1324	2,000대이하	0		기 설치운영중
영등포구	1325	2,000대이하	0		기 설치운영중
성동구	1463	2,000대이하	1	104500000	8360000
종로구	1610	2,000대이하	1	104500000	8360000
성북구	1755	2,000대이하	1	104500000	8360000
동대문구	1872	2,000대이하	1	104500000	8360000
은평구	1876	2,000대이하	1	104500000	8360000
구로구	1884	2,000대이하	1	104500000	8360000
관악구	1912	2,000대이하	1	104500000	8360000
용산구	1973	2,000대이하	1	104500000	8360000
서초구	2258	3,000대이하	1		기 설치운영중
강남구	2588	3,000대이하	1	145500000	11640000